



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
(경유)

제목 건축물관리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(해체공사 착공 전 이행할 안전관리대책)

1. 평소 우리 부의 국토교통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, 건축디자인과-13723호(2022.07.11.)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2. 귀 기관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의 범위 관련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 - 가.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제2제2항에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 1.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
 2.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
 3.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(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)의 이행 여부
 - 또한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제1항에서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1. ~ 3.(생략), 5. ~ 6.(생략)
 4.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, 공해 방지 방안, 교통안전 방안,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
 - 나. 따라서,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이행할 수 안전관리대책의 범위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, 공해 방지 방안, 교통안전 방안,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중 해체 허가(신고) 수리 시에 허가권자가 요구한 사항으로 제한됩니다.
 - 본 사항은 착공 이전에 건축물의 화재 발생 요인, 공해 유발 요인, 인접 교통안전위협 요인,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 확보 필요성, 낙하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공사 착수 전이라도 시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주요 안전관리대책은 향후 해체공사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
 - 그러므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전에 이행할 수 안전관리대책을 가시설 및 공종의 종류 등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, 그 대상의 선정은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 및 현장 여건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사무관대우

임상헌

시설사무관

이지연

건축안전과장

2022. 7. 25.

김연희

협조자

시행 건축안전과-3696

(2022. 7. 25.)

접수 건축디자인과-14910

(2022. 7. 25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층 건축안전과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986

팩스번호 044-201-5575

/ isheon74@molit.go.kr

/ 부분공개